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에 새만금사업의 시행자 추가 >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760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2. 20.
3. 회 부 일 : 2024. 12.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발전소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중형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비 지역 인근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되어 202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한편,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택지개발 사업시행자’ 등(이하 “의무설치자”라 함)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 실시 또는 시설 설치 전에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 사업지역의 경우 2.4GW의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사업이 확정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단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에서 제외되었는바, 법 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새만금지역 인근에 위치한 발전 시설에서 발전된 전기를 해당 지역 및 인근에 공급·소비함으로써 지역과 국가간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전력수급 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2호자목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로 사용해야 하는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호자목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illegible]

현행	개정안
시할 수 있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 아. (생략) <u><신설></u> 자. (생략) ② ~ ⑦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 -----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u>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u>」 제8조제1항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시행자 차. (현행 자목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3조제1항은 분산에너지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를 다량 사용하는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나 대규모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¹⁾에게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로 사용하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리고,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의무설치자가 설치해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의무자)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의무설치자"라 한다)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간 20만메가와트시 이상의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는 건축물(병원, 학교 및 그 밖에 건축물의 용도, 기능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2. 법 제13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 중 사업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의 시행자

야 하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량(이하 “의무설치량”)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²⁾하여 분산에너지 사용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 대상(제13조제1항각호)

-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관리자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의 관리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자
- 그 밖에 분산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지역, 지구 등의 관리자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5조(과징금의 부과·징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한 의무설치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에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단가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 사업지역에도 분산에너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에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등³⁾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는 해양수산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임.

새만금사업은 간척을 통해 새로 생긴 대규모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므로 새만금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분산에너지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현행법상 의무설치자의 대상이 되기에 적합한 특성을 갖추고 있음.

다만, 현행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의 할당은 의무설치자가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하나 이상이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넘는 법인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새만금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시설의 설치나 사업의 실시를 위한 계획에 이를 미리 반영해야 하는 만큼 아직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사업을 실시하기 전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새만금사업의 경우 2020년에 부지조성이 완료된 후 많은 구역의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의무설치자에 새만금사업의 시행자가 추가되더라도 스마트 수변도시, 스마트 그린산단 등 이미 개발·조성이 진행된 구역에 대해서는 의무설치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 할당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행자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개발 지연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새만금사업구역의 신속한 개발 필요성과 에너지 수급 균형을 위한 분산에너지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새만금사업지역은 지역 내에 육상·수상태양광 발전단지와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의무설치량 부과를 통한 추가적인 발전원을 확충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4) 2023년 12월 말 기준, 새만금 사업 현황도는 [참고자료] 참조

오히려 새만금지역의 전력 수요 대비 공급이 이미 과도한 상황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한 추가적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부과에 따른 발전원 증가는 호남지역의 계통 불안정성⁵⁾을 가중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58

5)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5월 30일에 호남·제주·강원·경북 등 전국 205곳 변전소를 계통관리 변전소로 지정하고 2024년 9월 1일부터 전력 계통 접속을 제한하여 해당 변전소가 있는 지역은 다음달부터 신규로 허가를 받아도 오는 2031년까지 태양광·풍력발전사업의 계통망 접속이 어려운 상황임.

[참고자료] 새만금 사업 현황도(2024년 12월 말 기준)

